

소방방재청고시제 2006-32 호

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2006년 12월 30일

소 방 방 재 청 장

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(NFSC 304)  
非常照明灯の火災安全基準(NFSC 304)

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률시행령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5 호·제 6 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“비상조명등”이라 함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.
- 2. “휴대용비상조명등”이라 함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.

제 4 조(설치기준) ①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·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
- 2.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
- 3.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.
- 4.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가.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
  - 나.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
  - 다.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.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(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)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
  - 라.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
- 5.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. 다만,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 조명등을 6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.
  - 가.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의 층
  - 나.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
- 6. 영 별표 5 제 10 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"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"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.

②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

가.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(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)에 1 개 이상 설치

나. 백화점 • 대형점 • 쇼핑센터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 개 이상 설치

다.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 개 이상 설치

2.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.8m 이상 1.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

3.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
4.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

5.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

6.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,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

7.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

제 5 조(비상조명등의 제외)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.

1.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

2. 의원 • 경기장 • 공동주택 • 의료시설 • 학교의 거실

②지상 1 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•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**피난이 용이한 경우,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**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**아니할 수 있다.**

제 6 조(설치·유지기준의 특례)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·개축·대수선되거나

용도변경

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조명등의 배관·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상조명등의 설치·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